

**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[피고인1,4에대하여는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**

[대구지방법원 2004. 12. 29. 2003고합503]



**【전문】**

**【피고인】**

**【검사】** 조호경

**【변호인】** 변호사 김진홍외 2인

**【주문】**

피고인 1을 판시 제1.의 가. 중 (1), (2) (가), (3), (4) (가), (5), (6), 제1.의 나., 제1.의 마. 중 (1) 내지 (3), (4) (가), (4) (나), (5) 내지 (8)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, 판시 제1.의 마. (4) (다)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, 피고인 2, 5, 6을 각 징역 3년에, 피고인 3을 판시 제1.의 가. (3) (가), 제1.의 라. (2), 제2.의 나. (1)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, 판시 제1.의 가. (3) (나), 제1.의 라. 중 (1), (3), (4), 제1.의 마. (3), 제2.의 가., 나. (2), 다.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, 피고인 4를 징역 2년에, 피고인 7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.

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14일을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제1.의 가. 중 (1), (2) (가), (3), (4) (가), (5), (6), 제1.의 나., 제1.의 마. 중 (1) 내지 (3), (4) (가), (4) (나), (5) 내지 (8)죄에 관한 위 형에 산입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, 3, 5, 6에 대하여는 각 4년간, 피고인 4에 대하여는 3년간, 피고인 7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의 공소외 1, 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, 피고인 4의 공소외 3, 공소외 4, 공소외 5, 공소외 6, 공소외 7, 공소외 8, 공소외 9, 공소외 10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.

**【이유】**

**【이유】**

**【이유】**

**【이유】**

**【이유】**